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2019. 5. 15.)

2019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2019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58
----------	-------

2019. 5.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19. 5. 1.
- 다. 회 부 일 : 2019. 5. 3.

2.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5,696,946	3,683,210	2,013,736	54.67%
일반회계	953,855	939,667	14,188	1.51%
시·도비보조금등	953,855	939,667	14,188	1.51%
특별회계(발전소)	4,743,091	2,743,543	1,999,548	72.88%
보전수입등	4,743,091	2,743,543	1,999,548	72.88%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총 계	23,423,405	17,086,951	6,336,454	37.08%
일반회계	19,239,256	14,894,802	4,344,454	29.17%
인건비	2,568,810	2,568,810	0	-
물건비	3,115,931	3,072,066	43,865	1.43%
경상이전	2,513,400	2,513,400	0	-
자본지출	10,355,526	6,740,526	3,615,000	53.63%
예비비및기타	685,589	0	685,589	순증
특별회계(발전소)	4,184,149	2,192,149	1,992,000	90.87%
물건비	106,760	106,760	0	-
자본지출	386,500	386,500	0	-
예비비및기타	3,690,889	1,698,889	1,992,000	117.25%

3.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9,239,256	14,894,802	4,344,454	29.17%
주택과	985,518	958,901	26,617	2.78%
도시계획과	1,306,395	804,602	501,793	62.37%
도시경관과	467,579	422,608	44,971	10.64%
건축과	273,934	272,075	1,859	0.68%
환경과	2,737,217	2,727,451	9,766	0.36%
공원녹지과	13,468,613	9,709,165	3,759,448	38.72%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계획과	3,690,889	1,698,889	1,992,000	117.25%

4.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증·감액 및 신규사업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택과	1)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구40,749	50,937	△10,188
	1)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구24,000	28,000	△4,000
도시계획과	1)합정재정비축진계획 변경 용역	65,000	0	65,000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1)예비비	3,690,889	1,698,889	1,992,000
도시경관과	1)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용역	43,865	0	43,865
공원녹지과	1)공원시설 유지관리용 작업차량 구매	25,000	0	25,000
	1)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5,500,000	2,000,000	3,500,000
	1)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차량구매	25,000	0	25,000

나.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

(단위:천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주택과	반환금기타	26,617	0	26,617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617	0	26,617
	1)2016년 온라인투표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93	0	193
	1)2017년 온라인투표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416	0	416
	1)2017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집행잔액(이자)반납	800	0	800
	1)2018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21,205	0	21,205
	1)2018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이자)반납	4,003	0	4,003
도시계획과	반환금기타	436,793	0	436,793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36,793	0	436,793
	1)2018년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사업 집행 잔액(이자)반납	6	0	6
	1)2018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이자) 반납	436,787	0	436,787
도시경관과	반환금기타	1,106	0	1,106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6	0	1,106
	1)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집행잔액(이자)반납	1,079	0	1,079
	1)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시민참여) 집행잔액(이자)반납	27	0	27
건축과	반환금기타	1,859	0	1,859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59	0	1,859
	1)2018년 재건축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859	0	1,859
환경과	반환금기타	9,766	0	9,766
	01 국고보조금반환금	318	0	318
	1)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회복지시설 LED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304	0	304
	1)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4	0	14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448	0	9,448
	1)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20	0	120
	1)2017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휘도측정 장비 구매 집행잔액(이자)반납	9,328	0	9,328
공원녹지과	반환금기타	209,448	0	209,44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9,448	0	209,448
	1)서울형도시텃밭 조성 집행잔액(이자)반납	5,887	0	5,887
	1)에코스쿨 조성 집행잔액(이자)반납	18,385	0	18,385
	1)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 집행잔액(이자)반납	1,864	0	1,864
	1)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313	0	1,313
	1)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집행잔액(이자)반납	6	0	6
	1)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이자)반납	1,140	0	1,140
	1)신수동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집행잔액(이자)반납	180,853	0	180,853

5.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19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1,373만6천원 증액된 56억9,694만6천원임.
 - 주택과 일반회계에서 시·도비보조금등 1,418만8천원,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9,954만8천원 증액됨.
-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4,445만4천원 증가(29.17%)된 192억3,925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9,200만원 증가(117.25%)된 36억9,088만9천원임.

나.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9억5,890만1천원에 2,661만7천원 증액된(2.78%) 9억8,551만8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로 구비 1,418만8천원을 감액하고 , 각종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6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억460만2천원에 5억179만3천원 증액된(62.37%) 13억639만5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캠퍼스 조성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토지소유자 해제민원 요청에 따른 합정재정비축진계획 변경 용역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억2,260만8천원에 4,497만1천원 증액된(10.64%) 4억6,757만9천원으로, 편성내역은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전수조사용역비 4,386만5천원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시범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억7,207만5천원에 185만9천원 증액된(0.68%) 2억7,393만4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7억2,745만1천원에 976만6천원 증액된(0.36%) 27억3,721만7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LED조명교체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97억916만5천원에 37억5,944만8천원 증액된(38.72%) 134억6,861만3천원으로, 편성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공원지설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차량 구매비와 에코스쿨 조성, 신수동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액은 36억9,088만9천원이며, 편성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

6.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 금번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합정재정비축진계획 변경 용역,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시설 유지관리용 작업차량 구매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세입 재원 한도 내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시비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지출을 구분 관리해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유지용 차량 교체는 「물품관리법」 제16조2 제1항¹⁾에 따라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불용처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연수²⁾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및 경제적으로 유·불리를 고려해야 할 것임.

1)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별표2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7, 품명 : 화물트럭, 내용연수 : 8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좀 더 고려해야 할 것임.
- 기타 신규 사업은 효과성 및 긴급성, 교부금 및 보조금 확보 가능성, 사업 직접 수행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와 예산절감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 예산을 받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 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 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